

01
물질안전보건자료
(MSDS)로 화학물질의
유해·위험성 확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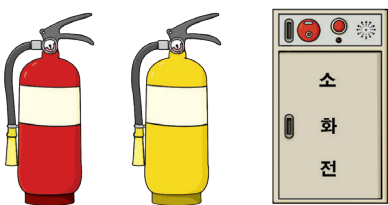
02
화학물질의 특성을
반영한 작업절차 마련·준수



03
외국인 포함
모든 근로자에게
안전보건교육 실시



04
화학물질의
특성에 맞는
소화설비·소화기 구비



안전한
화학물질
취급을 위한

10

대
안전수칙

05
비상구 확보,
비상대피훈련 실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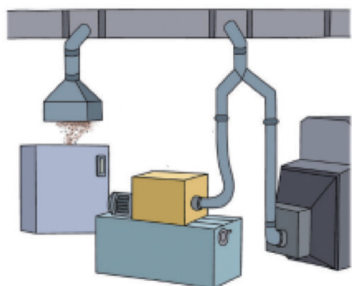
06
흡연, 불꽃, 정전기 등
점화원 차단



07
위험한 화학 물질은
별도 장소에 보관



08
충분한 작업장 환기



09
작업환경 측정,
특수건강 진단 실시



10
화학물질 특성에
맞는 보호구 착용



고용노동부

산업재해예방

안전보건공단



2026-전문기술실-156



화학물질 취급 안전수칙 점검표



취급 전 안내사항

구분	점검항목	결과
1	[유해·위험성 확인] 취급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해 유해·위험성을 확인하고 있나요? »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화학물질의 특성, 유해·위험성, 취급방법, 응급처치요령 등이 담겨 있습니다.	
2	[안전한 작업절차 마련] 화학물질 취급작업 시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고 있나요? » 유해·위험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고, 그에 따라 작업하십시오.	
3	[안전보건 교육]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·위험성, 안전한 작업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나요? » 내·외국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사고예방, 위험상황의 인식 및 대처능력 배양을 위해 매우 중요 합니다.	

작업 시 조치사항 및 화재 등 비상대응

구분	점검항목	결과
4	[소화설비] 적절한 소화설비 및 소화기를 갖춰 두었나요? » 소화설비 및 소화기는 취급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.	
5	[비상구 확보 및 대피 훈련] 비상 시 이용할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고, 대피훈련을 하나요? » 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하는 작업장에서는 주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.	
6	[화재·폭발 방지조치] 화기나 그 밖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나요? » 흡연, 불꽃, 열원, 정전기 등은 점화원이 될 수 있습니다. 물질에 따라서는 물과의 접촉, 마찰, 충격에 의해서도 화재·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	
7	[안전한 보관 및 저장] 화학물질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, 작업장에는 필요한 양만 두고 있나요? »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,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합니다.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.	
8	[작업장 환기]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환기하고 있나요? » 작업장 내 유해물질의 농도를 낮춰 건강보호뿐만 아니라 화재·폭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.	
9	[작업환경 및 건강관리] 정기적으로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나요? »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험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. 일부 화학물질은 작업환경측정,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.	
10	[보호구 착용] 화학물질 취급 시 해당 화학물질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나요? » 화학물질의 종류에 적합한 보호구(방독마스크 등)를 선택하여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	

